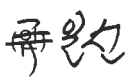





공장심사 부적합 보고서

공장(회사)명	(사)한국척수장애인협회(가구사업소)	대표자	구근회	
소재지	경기도 포천시가산면 마정로59, 마정로61	전화	031-544-0410	
		E-mail		
신청품목 (표준번호)	수납 가구 (KS G 2020)	종류 등급 및 호칭	1층(문과 서랍 구성품을 모두 포함)	
심사일자	2021-05-04 ~ 2021-05-04	조치기한	인증계약서 제18조 참조	
평가항목	부적합구분 (일반품질/핵심품질)	부적합내용		담당심사원
2.5	일반품질	-파티클보드 재료 및 인수검사규격(KSS-E-105)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수검사 성적서가 사내표준과 상이하여 개선이 요구됨.		류일선
6.3	일반품질	-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, 보건,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안전보호구 지급기록이 관리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 됨. -관련표준: 안전보건 관리규정(KSS-C-501)		이규진
부적합수	합계	개선조치 평가항목 (일반품질)	확인조치 평가항목 (핵심품질)	
	2	2	0	
기타개선 권고사항	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45일 이내(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)에 개선조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<p>&lt;인증 제품(서비스)이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의 조치 안내&gt;</p> <p>1.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·특별 현장조사 실시 가능 (계약서 제18조제1항)</p> <p>2. 핵심품질 평가항목 부적합한 경우, 인증기업 KS마크 표시정지 (계약서 제18조제2항)</p> <p>3. 시정조치를 완료 시 적합한 것으로 판정. 다만, 기한내 시정 조치 하지 못한 경우 인증취소 가능 (계약서 제18조제3항)</p> <p>위와 같이 심사 부적합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1년 05월 04일</p> <p>확 인 자</p> <p>한국표준협회 : 류일선 </p> <p>입 회 자</p> <p>대 표 자 : 구근회(인) </p> <p>한국표준협회 : 이규진 이(인) </p> <p>품질관리담당자 : 진대건 </p>				